수출입 검역 · 검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검역 · 검사]

『수출입 검역 · 검사』 콘텐츠는 수출입 시 어떤 종류의 물품이 검역 및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검역 · 검사 신청 절차와 검역 · 검사방법, 검역 · 검사결과까지 순차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에 다녀오며 가져올 수 있는 물품들에 어떤 검역과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쉬운 질문과 답 형태로 제공합니다.

수출입 검역 · 검사 1
1. 동물검역 4
1.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4
1.1.1. 검역대상 4
1.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5
1.1.3. 수입금지 대상 6
1.2. 검역절차 9
1.2.1. 수입검역 9
1.2.2. 수출검역 13
2. 식물검역 17
2.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17
2.1.1. 검역 대상 17
2.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18
2.1.3.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20
2.2. 검역절차 22
2.2.1. 수입검역 22
2.2.2. 수출검역 27
2.2.3. 국내 지역 경유 검역 30
3. 수산생물검역 33
3.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33
3.1.1. 검역 대상 33
3.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34
3.1.3. 수입금지 대상 36
3.2. 검역절차 37
3.2.1. 수입검역 37
3.2.2. 수출검역 41
4. 수입식품등 검사 45
4.1. 검사 대상 및 방법 45
4.1.1.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45
4.1.2. 검사 방법 46

1. 동물검역

1.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1.1.1. 검역대상

동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

▪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위 1.부터 4.까지의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함) 7.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위 1.부터 10.까지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동물검역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 동물검역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종류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럼피스킨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전염성 질병

1.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 지정검역물을 위의 장소를 통해 수입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7조 단서).

>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시행장에서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본문).

지정 검역시행장

▪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수출입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 수입검역물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는 경우
-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

▪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단서).

-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의 검역

▪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애완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1.1.3.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해면상뇌증"이란?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Q.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에서 비발생국의 우골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에서 '우골'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비록 우골의 원산지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가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안내서)

※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가능한 수입금지 물건

▪ 수입금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동물에 한함)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각·매몰 및 반송 조치

▪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 수입이 금지된 물건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각·매몰 및 반송의 이행기간

▪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화물주가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소각·매몰 및 반송의 비용 부담

▪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 반송, 소각·매몰등 조치명령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5항).

※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1.2. 검역절차

1.2.1.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 위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3호).

▪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3항제7호).

>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수입검역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검역신청서 √ 동물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입허가증명서 1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제출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박제품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를 구비한 개·고양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검역 수수료

▪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검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및 별표 19).

구분	수수료	비고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2만원	

※ 그 밖에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시 주의사항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수입자의 성명
-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 출발지

▪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6호).

우편물·탁송품 신고

▪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 다만, 우체국장 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화물목록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에게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1항).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동물검역관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화물목록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3항제8호).

수입검역 방법 및 기간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검역 대상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표 7제1호가목·나목).

▪ 검역은 검역물의 종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의 예외

▪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판정

검역증명서 발급

▪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에서 해당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혹은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전단).

▪ 수입 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공항·항만·우체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함)
- 견본품
-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정부의뢰검역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및 제36조제2항).

검역 불합격 시 처분

▪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 검역 불합격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하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 ※ 반려동물과 입국하기
>
> Q.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입국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A. 아니요, 동물 수입의 사전 신고는 1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를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시 사전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
> 하지만 해외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사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1.2.2.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단서).

※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3항제9호).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면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2항).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수출검역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수출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및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 수수료

▪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검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및 별표 19).

구분	수수료	비고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2만원	

※ 그 밖에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 방법 및 기간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르며,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표 7제1호가목·다목).

▪ 검역은 검역물의 종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의 예외

▪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 판정

검역증명서 발급

▪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서 해당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전단).

▪ 수출 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 공항·항만·우체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함)
- 견본품
-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정부의뢰검역물

검역 불합격 시 처분

▪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 반려동물과 출국하기

Q.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동물 수출을 위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등)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하면 동물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는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시: 출국 전 7일 이내, 48시간 이내 등)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출 동물 검역 절차 QnA)

2. 식물검역

2.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2.1.1. 검역 대상

식물검역의 대상물품

"식물검역"이란?

▪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물검역대상물품

▪ 식물검역대상물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종류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은 제외함)
병해충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 따른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검역 대상 병해충

병해충

▪ 검역 대상 병해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구분	개념 및 종류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 검역대상 병해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병해충 정보>및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애완용 달팽이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달팽이는 곤충, 응애, 선충, 그 밖의 무척추동물과 함께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병해충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해충위험분석의 결과 국내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에 위해성이 없고,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에 따른 검역 절차를 거쳐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2.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장소

수입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이하 “수입항”이라 함)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9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장소

검역장소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보세운송된 도착지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 식물검역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이하“선상검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본문).

-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박류: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함)
-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수입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단서).

국외 생산지검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 수출국이 해당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 수입금지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을 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은 선상검역 및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3항).

수출 식물등의 검역장소

검역장소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본문).

재배지에서의 검역

▪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해당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단서).

2.1.3.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식물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함)

   ②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 Q.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과일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나요?
>
> A. 껍질이 벗겨지거나 잘게 잘랐다고 해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 과일일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특히, 기내식에서 제공되는 과일도 금지식물에 해당하므로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내로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 폐기사례집)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식물등

▪ 수입 금지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함)를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수입금지 식물(「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로서 해당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해당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없는 식물(「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2).

▪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는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전단).

▹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후단).

※ 유출하거나 반출한 금지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 ※ 수입 금지품의 수입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망고는 수입금지물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트에서 팔고 있나요?
>
> A. 망고와 같은 일부 과일은 생과(生果) 상태로 반입할 경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 하지만, 수입금지식물 중에서도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은 수입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참조).

> 따라서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망고, 체리 등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물로서 검역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 폐기사례집 참조)

수입제한 대상

수입제한 식물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및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2.2. 검역절차

2.2.1.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 수입신고를 지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

> Q. 식물을 수입했는데, 며칠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 A. 식물검역대상물품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화물이 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제출 서류

▪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함)
- 해당 물품이 금지품인 경우 수입허가증명서
-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검역 대상 식물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2항).

▪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검역 수수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종류별 검역 신청

우편물·탁송물 수입검역

▪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함)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식물검역관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 위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의3·제4호 및 제4호의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리지 않은 자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지체한 자

목재포장재의 수입 검역

▪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1.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함)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① 위 1.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② 위 2.의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③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 수입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 ※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1호).

▪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령해야 하며, 해당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 목재포장재의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의2제1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검역

▪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수 있고,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의2제1호의2).

수입검역 방법

검역방법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서류에 의한 검역
-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실험실정밀검역
- 격리재배검역

> Q. 해외에서 대량의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검역할 때 수입하는 전량을 검역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채취해서 검역하나요?
>
> A.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현장검역 시 위험도에 따라서 전체 수량을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전량을 검역하지는 않고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참조).
>
> 그 외에 품목별 검역물의 수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격리재배검역

▪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수입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령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해당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3조).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격리재배검역요령」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양딸기 묘(苗)
-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하고,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거나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 ※ 격리재배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격리재배검역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수입검역 판정

검역합격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수입검역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역 결과 처분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수입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 수입금지를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물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아래 1.의 경우에만 해당)·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1.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식물은 제외함
2.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함

▪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 식물검역관의 회수·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 검역 불합격에 따른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 처분 방해 등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 ①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②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격리재배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4호).

2.2.2.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검역에서 합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에서 제외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단서).

※ 수출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제출 서류

▪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

▹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음)

▹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출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

검역 수수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 ※ 선박검역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원의 「선박검사수수료 징수업무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 검역 신청

목재포장재의 수출검역

▪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1항).

> ※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1호).

▪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목재포장지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4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

> Q. 목재포장재를 수출할 때 검역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 A. 아니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독처리마크 표시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 참조).
>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3).

식물등이 아닌 물품의 수출검역

▪ 식물등이 아닌 물품(선박 등 운송수단은 제외함)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함)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수출검역 방법

검역방법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18조제1항).

- 서류에 의한 검역
-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실험실정밀검역
- 격리재배검역

>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수출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4제1항).

수출검역 판정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표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아닌 물품에 대해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지에 대한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5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했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검역 불합격 시 처분

▪ 수출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본문).

2.2.3.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승인 절차

국내 지역 경유 승인

▪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 및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검사

▪ 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사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 발급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식물검역관은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경유물품의 도착

경유기간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함)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24조).

도착 신고 및 검사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경유물품 도착신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수송 과정에서 해당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6호).

소독·폐기·반송·반출 등의 조치명령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1항).

-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유물품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10호).

▪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7조제2항).

- 위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위의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7호).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유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3. 수산생물검역

3.1. 검역 대상 및 장소 등

3.1.1. 검역 대상

수산생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이란?

▪ "수산생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수산동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및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와 그 정액(精液) 또는 알
- 수산식물: 살아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

지정검역물

▪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 Q1. 말린새우? 냉동새우? 어떤게 검역 대상이죠?
>
> A1. 냉동한 새우류는 수산생물 검역의 지정 검역 대상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생새우와 냉장새우, 냉동새우는 검역 대상이지만 말린새우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Q2. 그런데, 수산생물검역은 왜 해야 하죠?
>
> A1. 국내에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돕고 국내 양식산업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

검역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전염병

▪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7호).

- 수산동물전염병: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 ※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
>
> 2025년 7월 5일부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양서류 전염병이 검역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양서류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
>
> 양서류에 대한 검역 대상 전염병은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2).
>
> 따라서, 양서류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3.1.2.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제출해야 하며,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항).

>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검역시행장

"검역시행장"이란?

-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2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

-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그 외의 검역시행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수산물생산시설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유형
-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
-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지정검역물의 종류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위의 사항을 등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에 따라 등록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6항).

현지실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3.1.3.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이 금지된 수산생물 등임에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 수입허가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신청자에게 수입허가 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에 대한 조치

소각·매몰 및 반송 조치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 수산생물의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소각·매몰 및 반송의 이행기간

▪ 소각·매몰 및 반송 조치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검역물을 소각·매몰등 또는 반송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의 이동금지

▪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

※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4호).

3.2. 검역절차

3.2.1.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 Q.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한 경우, 수산물로 수입하나요? 아니면 가공식품으로 수입하나요?
>
>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변형한 것을 혼합한 것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염(천일염 혹은 기타소금 등)을 단순 혼합한 경우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67쪽)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제출 서류

▪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수입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파견검역으로 인해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6.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9.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대검역물의 수입검역

-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

• 휴대검역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검역 수수료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항목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1만5천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만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원	

※ 수입검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방법

검역방법 및 기준

▪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수입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별표 3).

구분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검사과정 및 시료채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판정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검역 불합격 시 처분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Q.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검역을 받을 수 없나요?

A. 검역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재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이 경우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 파견검역

• 수입검역과 관련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 검역하는 것을 파견검역이라고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파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검역 희망일 30일 전까지 파견검역 요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지정검역물 중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첨부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면제(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3.2.2.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3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출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제출 서류

▪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제출서류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검역 수수료

▪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항목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1만5천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만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원	

※ 수출검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 방법

검역방법 및 기준

▪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별표 3).

구분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검사과정 및 시료채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 판정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검역 불합격 시 처분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Q. 수출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역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이 경우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4. 수입식품등 검사

4.1. 검사 대상 및 방법

4.1.1.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이란?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종류	내용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기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함)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수입금지 수입식품등

수입금지 식품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금지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 Q. 라면은 과일도 고기도 아닌데, 왜 출입국 시 제재를 받는 건가요?
>
> A. 라면 중에는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등의 형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성분이 축산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라면이라도 모두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의 성분 구성(고기 포함 여부 등), 수입 경로(우편, 항공, 해상 등) 및 국가별 검사 요건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4.1.2. 검사 방법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평가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단서).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신고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 Q. 중국산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
> A. 네, 멸균처리된 소시지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르면, 중국산 멸균처리 식육가공품 중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제1호나목].

또한,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고, 해당 축산물의 해외제조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함)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함)를 실시하며,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

▪ 영업자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4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입식품등 검사-검사 대상 및 방법-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함)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함)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 Q. 견본품으로 전시용 와인잔을 수입할 경우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 A.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무상 반입되는 전시용 와인잔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에 샘플, 비매품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
>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2025년 자주하는 질문집)

수입신고 수리 및 보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검사

수입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함)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 수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수입검사의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입검사

•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함)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입고예정일, 소재지, 보관책임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검사 불합격 시 처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폐기